청평초등학교 회계 세입·세출 예산서

예산 총칙

예산구분 : 추경3회

예산안확정일자	-	예산액	1,508,082,000

예산총칙
제1조 2021학년도 청평초등학교 제3차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,세출 각각1,508,082,000원으로 하며 세입,세출의 명세는 '세입,세출예산서'와 같다.
제2조 1)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17조 단서에 의하여 비목 상호
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.
1. 교원연구비, 관리 및 직책 수당, 겸직수당
2.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
3. 각종 공과금
2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제3조 회계연도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, 학교발전기금 전입금 또는 선택적 교육수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. 다만,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
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.